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 - 1 (3호)
안건유형	심의

지자체 - 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 - 학교돌봄터 사업 -

2021. 1. 19.



관계부처 합동

차 례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추진 방향	3
III.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계획	4
1. 사업 주요내용	4
2. 사업 시행개요	5
3. 사업 추진체계	6
IV. 추진 일정	7
[붙임 1] 표준업무협약서(안)	8
[붙임 2]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안)	10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국가를 구현하고 인구급감 위기를 여성경제 활동 확대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족한 돌봄 안전망** 구축 필요
 - 초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증하는 데 반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 *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0~5세), 누리과정(3~5세) 지원 등
 - ** 공적 돌봄 이용률('19년): 영유아 85%(200/235만명), 초등학교 14.5%(40/275만명)
 - 초등 돌봄 사각지대와 돌봄기관 간 분절적 사업 추진을 해소하고 수요자(아동) 중심 돌봄 제공을 위해 **지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 필요
- '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간 협업을 통해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 확대 필요
 - '20년말 기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통해 **42.1만명**(정원 기준)으로 돌봄 확대('20년 목표 40.8만명 대비 1.3만명 초과)
 - * (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21년부터 지자체-학교 협업을 통한 돌봄이 차질없이 제공 (3만명)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돌봄 모델**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온종일 돌봄계획, '18. 4.) ('17년) 33만명 → ('22년) 53만명 수준

	'17년	확 대	'22년
학교돌봄	24만	7만 (초등돌봄교실, 3,500실) 3만 (활용가능교실, 지자체 협업, 1,500실)	34만
마을돌봄	9만	10만	19만
총계	33만	20만	53만명

2. 추진 경과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 학교가 연계한 돌봄모델 발굴('18.4.~'20.12.)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

- (2개 지역) 학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운영
 - (충남 홍성) 홍성초, 홍주초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돌봄 제공
 - (전남 광양) 광양제철초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돌봄 제공
- (7개 지역) 주민 커뮤니티시설, 아파트 단지 등을 이용하여 운영
 - (서울 구로, 노원, 성동, 성북 / 대전 서구 / 경기 시흥, 오산) 주민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체육관) 및 아파트단지 내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돌봄 제공

-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발굴('19.10. ~ '20.3.)

<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례 >

- (서울 중구) 흥인초(3실), 봉래초(2실), 광희초(2실), 남산초(3실), 청구초(4실) 활용하여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을 운영·관리하는 '모든 아이 돌봄교실' 운영('19.3.~)
 - (주요 내용) 오전 7시30분 ~ 저녁 8시 운영, 돌봄인력 증원(1교실당 돌봄 전담사 2명), 간식·석식 무료(방학중식 포함)

- 관계부처,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 계획안' 마련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협력돌봄 사업의 운영주체* 및 재원분담 비율** 등을 확정('20.6. ~ '20.8.)

* 지자체가 운영 주체로서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는 돌봄공간을 제공

** 시설비는 교육청 전액 부담, 운영비는 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로 부담

-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 의견수렴('20.12.)

* 사업의 운영방식, 지원유형, 돌봄종사자 처우 등

II. 추진 방향

- ❖ 지자체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서로 연계·협력하여,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학교돌봄터) 제시

□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 제고

-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내 돌봄교실(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21~'22년 돌봄 수혜인원 3만명 확대
-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학부모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돌봄의 질 향상

* 기존 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13:00~17:00)보다 2시간 연장

□ 지자체 중심의 공공성이 보장된 돌봄 제공

-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학교돌봄터 설치·운영
-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며, 위탁 시에도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

* 질 높은 사회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20년 총 11개 운영 중('21년 3개, '22년 3개 신규 설립 목표)

□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 도모

- 마을돌봄 및 학교돌봄과 동일하게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마을돌봄('20.6. 구축), 초등돌봄교실('21.1. 구축), 학교돌봄터('21.下 구축 예정)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돌봄전담사의 신분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용성 제고

Ⅲ.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주요내용

- (운영 형태)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 운영
 - [지자체] 돌봄 제공 및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등 운영·관리 책임
 - [학교]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 제공 및 학교시설(운동장 등) 이용 지원
- (이용 대상)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
 -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우선 이용 대상자 선정 가능
- (운영 시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00~17:00)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틈새돌봄 또는 돌봄시간 연장 제공*
* 정규수업 전 아침돌봄(07:00~09:00), 방과후 저녁돌봄(17:00~19:00) 등
- (인력 배치) 실당 업무 담당자 1명, 학교당 관리자 1명 원칙
- (운영 방식)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 위탁 시, 학교돌봄터의 공공성 저하 우려를 감안하여 광역지자체가 출연·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권장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돌봄 전환)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 여부는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고 있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
 - ※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학교돌봄터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학교돌봄 확대 목표('22년 31만명)는 다른 학교를 통해 총당할 계획

2. 사업 시행개요

- (사업 기간) '21년 ~ (계속)
- (선정 규모) '21년 ~ '22년 2년간 매년 750실(총 1,500실, 3만명)
- (예산 지원) 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으로 지원*

*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 30백만원, 운영비(인건비+기타운영비) 연간 평균 63.2백만원

- '21년 시설비 총 225억(교육청 부담), 운영비 총 158억(국고:교육청:지자체가 1:1:2로 분담)
 - 운영비는 4개월분에 해당(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9월~12월 학교돌봄터 운영)
 - 교육청 지방비(시설비,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

□ 지원 유형 및 조건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 시설비·운영비 지원

- (예시) A지자체가 B초등학교(예 : 초등돌봄교실 3개 운영 중) 내에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학교돌봄터 1개를 신규로 설치·운영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신규 학교돌봄터에는 시설비·운영비, 전환한 학교돌봄터*에는 운영비 지원

* 사업 시행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같은 학교 내 지자체 돌봄교실 포함

- (예시) A지자체가 B초등학교(예 : 초등돌봄교실 3개 운영 중) 내에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학교돌봄터 1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초등돌봄교실 3개 중 1~3개를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총 2~4개의 학교돌봄터 운영

- 동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 : 운영비 지원

□ (사업 신청) 17개 광역지자체 및 228개 기초지자체(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지자체-교육청-학교간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신청

*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사전 업무협약 체결[붙임①]

- ** (사업 추진일정) 지자체 사업 신청('21.1월~3월) → 추경 편성 등(3월~6월) → 공간 리모델링(7월~8월) → 학교돌봄터 운영(9월~12월)

- (선정 방향)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되,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큰 지자체를 우선 선정

3.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사업추진 체계) 중앙·지방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추진

○ (중앙정부) 복지부-교육부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

- (복지부) 운영비(국고) 교부, 지자체 사업 추진 관리·점검 등

※ (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지자체 운영 지원 및 필요시 컨설팅 지원 등 사업 관리 실시

- (교육부) 시설비·운영비(보통교부금) 교부, 학교 공간 정보 제공 등

○ (지방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와 학교돌봄터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돌봄협의회*를 통한 협의

*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돌봄 관련 전문가, 돌봄 시설 운영자 등으로 구성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예산 편성 및 돌봄 제공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및 지원

- (학교) 활용가능교실 등 제공,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 지원[붙임②]

※ 학교돌봄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함께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 같은 학교 내에서 지자체 돌봄과 학교 돌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지자체 돌봄종사자와 학교 돌봄전담사 등과의 협의회 구성 권장

IV. 추진 일정

<p>기본계획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 발표 	<p>'21. 1. 19.</p>
<p>↓</p> <p>사업 공고 및 사업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지자체 · 교육청 대상 사업 설명 	<p>'21. 1월중 ~ ~'21. 3월초</p>
<p>↓</p> <p>지자체 선정 및 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지자체 선정 결과 통보 	<p>'21. 3월초</p>
<p>↓</p> <p>사업 세부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지침 제작·배포 	<p>'21. 3월중</p>
<p>↓</p> <p>추경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교육청별 추경 편성 등 	<p>'21. 3~6월</p>
<p>↓</p> <p>공간 리모델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학교 공간 리모델링 ■ 사업지원단 설치·운영 및 사업 컨설팅 실시 	<p>'21. 7~8월</p>
<p>↓</p> <p>학교돌봄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학교돌봄터 운영 ■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관리 ■ '학교돌봄터 원스톱시스템' 구축(정부24內) 	<p>'21. 9~12월</p>
<p>↓</p> <p>사업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성과 연차평가 등 실시 	<p>'22. 2월</p>

지자체-교육청-학교 학교돌봄터 표준업무협약서(안)

○○시(○○군·○○구)와 ○○교육청·○○학교는 학교 내 활용가능한 교실 등을 이용하여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21.1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장(또는 교육감), 학교장과 협력하여 지역 내 초등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학교돌봄터라 함은 학교가 활용가능한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② ○○시(○○군·○○구)가 ○○초등학교 내에 설치·운영하는 학교돌봄터의 명칭은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로 한다.

제3조(협력 분야)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가. 학교돌봄터 설치·운영
 - 나. 학교돌봄터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 확보
 - 다. 학교돌봄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라. 학교돌봄터 운영 인력 질 관리
2. 교육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가.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제반 사항 지원
 - 나. 학교돌봄터 설치비 및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 확보
 - 다. 학교 간 연결망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학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 가. 학교돌봄터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 사용허가
 - 나.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운동장, 도서관, 강당, 급식실 등 학교시설 사용허가
 - 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협력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는 안정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4조(이용 대상 및 운영 시간)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 및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 ○○ ~ ○○, 방학 중 ○○ ~ ○○으로 한다.

제5조(비용 부담)

①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용은 보건복지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1:1:2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②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규 학교돌봄터 시설의 설치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용은 보건복지부: 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1:1:2비율로 각각 부담하며, 전환한 학교돌봄터의 운영비용은 보건복지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1:1:2비율로 각각 부담한다.

제6조(협약 기간 등)

- ① 협약 기간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0년으로 한다.
- ② 이 협약서는 협약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 여부 등을 정한다.

제7조(의무 및 책임)

- ① 협약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 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시설에 대한 보안 확보 등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변경 및 해지 등)

- ①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때 이 협약서는 해지된다.
- ③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학교돌봄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의 돌봄에 차질에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9조(협약서의 해석 등)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00 시장(군수·구청장)
000

00 교육장(또는 교육감)
000

00 학교장
000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안)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아래 표시 교실 및 부속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대해 ○○초등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건물 등의 표시

부동산 : ○○시(○○군·○○구) ○○동 ○○번지 ○○초등학교 내 ○○교실, 운동장, 도서관, 강당, 급식실
(면적 00㎡) ※ 붙임 도면 참조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시(○○군·○○구)-○○초등학교 학교돌봄터(이하 “학교돌봄터”라 한다)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인계인수)

- ① 건물 등의 관리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장은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계한다.
- ② 학교장은 건물 등을 별첨 설계도면대로 인계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건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 허가기간 등)

- ① 사용 허가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 ② 사용 허가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

- ①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 ② 학교돌봄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과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돌봄터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장에게 학교돌봄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장의 면책사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교돌봄터 이용자(방문객 포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학교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돌봄터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화재, 재난, 기타 사고 등
2. 학교돌봄터 외의 부속시설(운동장, 도서관, 강당 등)에서 학교돌봄터 이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돌봄터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학교돌봄터 외의 부속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건물 자체에 본래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는 학교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건물 등에 파손,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등에 대해 일체의 원형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우선 선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돌봄터 이용자 모집 시 ○○초등학교 재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9조(학교돌봄터에 대한 부과금)

학교돌봄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각종 공공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의 가입 및 손해보험증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돌봄터 이용자의 상해, 식중독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 가스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등에 대하여 ○○시·도 교육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건물 등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건물 등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건물 등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단, 사전에 협의·승인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제11조의 위반으로 학교장이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

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협약의 갱신 등)

이 협약서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 여부 등을 정한다.

제14조(건물 등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건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 배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사용 허가기간 만료 등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돌봄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 학교돌봄터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 학교장
○○○